성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취지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낙동강수계관리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구조 (안 제2조)
나.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구조 (안 제3조)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편성·결산·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을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5조)
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6조)

3. 내 용 : 붙 임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7.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8.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